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40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김정호

전종덕 • 박홍배 • 허성무

민병덕 · 용혜인 · 한정애

안태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

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제1호, 제20조제4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65조제4항제3호).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근로자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중 "노동조합"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노동조합과"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로 한다.

제65조제4항제3호 중 "노동조합"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 일까지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6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4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추천하는 각 2명	노동단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20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4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한다.	
1.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 시민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	<u>노동단체</u>
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u>노동조</u><u>합과</u>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 2. · 3. (생략)
- ③ ④ (생 략)

제65조(임원) ① ~ ③ (생 략)

-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 1. 2. (생략)
- 3. <u>노동조합</u>·사용자단체·소비 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 천하는 각 1명

⑤ ~ ⑦ (생 략)

(2)	
	•
1 <u>전</u>	<u>국적</u>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	동단
<u>체와</u>	
2.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5조(임원) ① ~ ③ (현	행과
같음)	
4	
<u>.</u>	
1. • 2. (현행과 같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	체인
노동단체	
⑤ ~ ⑦ (현행과 같음)	